

제329회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4년11월19일(수)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
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한·중·일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체결 촉구 결의안
3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국외 건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80.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법률안
- 8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2.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9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결의안
- 97. 행정입법 검토의 건
- 98. 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 의사일정 상정의 건 9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진복·김태원·심윤조·이종훈·신동우·염동열·이종진·손인춘·박상은·이노근·문대성 의원 발의) 9
- 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강기정·이상직·박홍근·배기운·강동원·조정식·홍의락·최민희·박민수·김관영 의원 발의) 9
- 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전순옥·장하나·전정희·김광진·김민기·강창일·이원욱·박홍근·김윤덕 의원 발의) 9
-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태 의원 대표발의)(조정태·이찬열·최원식·배재정·전순옥·정성호·부좌현·황주홍·박주선·전정희·이한성·김제남 의원 발의) 9
- 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 6.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정문헌·박창식·서용교·양창영·김을동·김성태·이상일·정희수·송영근·윤명희 의원 발의) 9
- 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윤재욱·박명재·이한성·정성호·박인숙·이에리사·문대성·강기운·이노근 의원 발의) 9
- 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이우현·송영근·홍지만·안덕수·유성엽·김승남·최규성·안효대·윤명희·유승우 의원 발의) 9
- 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이명수·권성동·정희수·류지영·송영근·김기선·최봉홍·하태경·김세연 의원 발의) 9
- 1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송영근·김종태·윤명희·정희수·

- 이한성 · 민병주 · 문정립 · 장윤석 · 김무성 · 류지영 · 김장실 의원 발의) 9
- 1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 · 최재성 · 이종걸 · 이상직 · 박홍근 · 이원욱 · 박주선 · 노영민 · 김용익 · 강동원 · 배재정 · 이미경 · 박원석 · 배기운 · 김재윤 · 김동철 · 장하나 · 이학영 · 이석현 · 전순옥 · 이목희 · 홍영표 · 김미희 · 정진후 · 인재근 · 이인영 · 이윤석 · 진성준 · 김현미 · 황주홍 · 변재일 · 김기식 · 강기정 · 노용래 · 김광진 · 윤관석 · 이해찬 · 안민석 · 남인순 · 유성엽 · 한명숙 · 홍의락 · 부좌현 · 박남춘 · 신경민 · 이상호 · 김성주 · 우원식 · 심상정 · 서영교 · 김승남 · 심재권 · 박영선 의원 발의) 9
- 1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김광진 · 김기식 · 김재윤 · 박남춘 · 박민수 · 박주선 · 전순옥 · 전해철 · 정진후 · 진선미 의원 발의) 9
- 1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 · 이한성 · 윤명희 · 정희수 · 김무성 · 김영우 · 정갑윤 · 안덕수 · 이명수 · 이만우 · 류지영 · 이진복 · 이채익 · 박명재 · 김성태 · 이에리사 의원 발의) 10
- 1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 · 양승조 · 이석현 · 김경협 · 배재정 · 김우남 · 정호준 · 김광진 · 장하나 · 조정식 · 원혜영 · 최동익 · 진성준 · 윤관석 · 박남춘 · 김재윤 · 우원식 · 이용섭 · 배기운 · 정세균 · 홍영표 · 백재현 · 윤후덕 · 정진후 · 임수경 · 이원욱 · 한정애 의원 발의) 10
- 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 · 김상훈 · 권성동 · 권은희 · 박대동 · 경대수 · 이완영 · 김제식 · 박창식 · 정희수 의원 발의) 10
- 16.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정부 제출) 10
- 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 · 박창식 · 김을동 · 주영순 · 김정록 · 박성호 · 이상일 · 정문헌 · 홍영표 · 문대성 · 김한표 · 윤명희 · 정수성 · 강석훈 의원 발의) 10
- 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 전순옥 · 장하나 · 전정희 · 김광진 · 김미희 · 강창일 · 이원욱 · 김우남 · 박남춘 의원 발의) 10
- 1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 · 박창식 · 강석훈 · 신성범 · 윤명희 · 하태경 · 주영순 · 주호영 · 김상민 · 정우택 · 박성호 · 정갑윤 · 장윤석 · 김희국 · 김정록 의원 발의)(의안번호 8920) 10
- 2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 · 박창식 · 이상일 · 주영순 · 유승우 · 박성호 · 박윤옥 · 김을동 · 김정록 · 문대성 · 정갑윤 · 정문헌 · 강석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57) 10
- 2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김기준 · 최원식 · 박남춘 · 부좌현 · 장하나 · 우원식 · 이학영 · 심상정 · 정청래 · 홍영표 의원 발의) 10
- 2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 · 박창식 · 유승우 · 양창영 · 김을동 · 박성호 · 이상일 · 김성태 · 박민식 · 신경림 · 문대성 · 주영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51) 10
- 23.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안민석 · 이언주 · 이학영 · 이춘석 · 배기운 · 부좌현 · 김기준 · 배재정 · 윤호중 · 한명숙 · 이미경 · 장하나 · 최민희 · 김경협 · 우원식 · 전정희 · 박완주 의원 발의) 10
- 2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 의원 대표발의)(송광호 · 강석훈 · 김성찬 · 김태원 · 박윤옥 · 서병수 · 서용교 · 이강후 · 이자스민 · 이한성 · 정의화 의원 발의) 10
- 2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 2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 · 김광진 · 배재정 · 전정희 · 정청래 · 정성호 · 장하나 · 손인춘 · 유성엽 · 배기운 · 송호

창 의원 발의)	10
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2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29.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유대운 · 배기운 · 이찬열 · 부좌현 · 박남 춘 · 임수경 · 진선미 · 문희상 · 정성호 · 박영선 의원 발의)	10
3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 · 하태경 · 홍문표 · 이만우 · 김상 훈 · 김춘진 · 김영록 · 정희수 · 강기운 · 김종태 의원 발의)	10
31. 한 · 중 · 일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체결 촉구 결의안(김영환 · 김춘진 · 배재정 · 부좌 현 · 조정식 · 박수현 · 안규백 · 김재운 · 배기운 · 이종걸 · 김영록 · 전순옥 · 송광호 · 노영민 · 김관 영 · 최민희 · 황주홍 · 김재경 · 강기정 · 추미애 · 강창일 의원 발의)	10
3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 발의)(최봉홍 · 김성태 · 이종훈 · 한명숙 · 김경협 · 서용교 · 심상정 · 홍영표 · 한정애 · 김상민 · 김 세연 · 박윤옥 · 박창식 · 유승우 · 윤명희 · 김영우 의원 발의)	10
3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한정애 · 김경협 · 김용익 · 박홍근 · 신기남 · 심상정 · 우원식 · 이윤석 · 장하나 · 홍영표 · 한 명숙 의원 발의)	11
3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 발의)(전순옥 · 안규백 · 박홍근 · 부좌현 · 윤후덕 · 김기준 · 최원식 · 황주홍 · 조정식 · 박주선 · 김 용익 · 김광진 · 정성호 의원 발의)	11
3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 발의)(최동익 · 안홍준 · 오제세 · 부좌현 · 김경협 · 김기준 · 전순옥 · 이상직 · 이목희 · 안규백 · 전 정희 · 김상희 · 김기식 · 김성곤 · 김태년 · 김승남 · 이해찬 · 김광진 · 김재운 · 박남춘 · 황주홍 · 인 재근 · 남인순 의원 발의)	11
3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홍영표 · 김영록 · 심상정 · 이윤석 · 김경협 · 이목희 · 안규백 · 이인영 · 한정애 · 전순옥 · 윤 관석 · 장하나 의원 발의)	11
3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 · 김성태 · 이종훈 · 한명숙 · 김경협 · 서용교 · 심상정 · 홍영표 · 한정애 · 김상민 · 김세연 · 박윤옥 · 박창식 · 유승우 · 윤명희 · 김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9734)	11
3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 · 주영순 · 류지영 · 박창식 · 이만우 · 황인자 · 송영근 · 윤명희 · 정희수 · 문대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02)	11
3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부좌현 · 진선미 · 김용익 · 박주선 · 추미애 · 배기운 · 윤후덕 · 배재정 · 박홍근 · 전순옥 · 정진후 · 이해찬 · 이미경 · 장하나 · 김상희 · 심상정 · 이상직 · 이상규 · 김광진 · 김재운 · 서용교 · 정성호 의원 발의)	11
4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경협 · 김용익 · 박홍근 · 신기남 · 심상정 · 우원식 · 이윤석 · 장하나 · 홍영표 · 한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9881)	11
4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관영 · 김용익 · 김현미 · 박민수 · 박주선 · 박지원 · 배재정 · 신계륜 · 신성범 · 심상정 · 이미경 · 이인영 · 임수경 · 장하나 · 전순옥 · 정성호 · 진선미 · 최원식 · 홍영표 · 홍의락 의원 발의)(의안번호 10433)	11
4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한정애 · 심상정 · 김광진 · 이해찬 · 추미애 · 배기운 · 윤후덕 · 한명숙 · 이찬열 · 남인순 · 장하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89)	11
4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이찬열 · 최원식 · 배재정 · 한명숙 · 배기운 · 부좌현 · 장하나 · 홍영표 · 심재권 · 이석현 · 김기준 · 박남춘 · 김광진 의원 발의)(의안번 호 10647)	11

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 · 이노근 · 이명수 · 염동열 · 조현룡 · 함진규 · 조해진 · 이철우 · 김정록 · 박윤옥 의원 발의) 11
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 홍종학 · 윤후덕 · 장하나 · 박민수 · 김광진 · 윤관석 · 남인순 · 유성엽 · 김성곤 · 서영교 의원 발의) 11
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김영록 · 심상정 · 이윤석 · 김경협 · 이목희 · 안규백 · 이인영 · 한정애 · 전순옥 · 윤관석 · 장하나 의원 발의) 11
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박병석 · 김기준 · 박민수 · 강기정 · 이원욱 · 정세균 · 홍익표 · 은수미 · 김성주 · 이미경 · 임수경 · 박주선 · 권성동 의원 발의) 11
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4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이이재 · 이채익 · 이노근 · 김태원 · 박명재 · 김을동 · 염동열 · 김명연 · 정희수 · 이완구 의원 발의) 11
5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류지영 · 정의화 · 문정림 · 조명철 · 최동익 · 이만우 · 이한성 · 안중범 · 박주선 의원 발의) 12
5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김제남 · 심상정 · 남인순 · 신경민 · 박민수 · 김광진 · 배재정 · 부좌현 · 배기운 · 정진후 · 전정희 · 김상희 · 이상민 의원 발의) 12
5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경협 · 도종환 · 민병두 · 배재정 · 신계륜 · 심상정 · 은수미 · 이석현 · 이인영 · 홍영표 의원 발의) 12
53. 국외 건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주영순 · 서용교 · 이강후 · 김무성 · 최봉홍 · 김용태 · 정우택 · 염동열 · 김태흠 의원 발의) 12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배기운 · 박홍근 · 주승용 · 최규성 · 박민수 · 이미경 · 김광진 · 윤호중 · 이학영 의원 발의) 12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박원석 · 서기호 · 김상희 · 김제남 · 심상정 · 유은혜 · 장하나 · 박홍근 · 유기홍 의원 발의) 12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 · 이해찬 · 윤호중 · 김상희 · 김선동 · 유대운 · 배기운 · 김재운 · 부좌현 · 배재정 · 안민석 · 박홍근 · 한정애 의원 발의) 12
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심상정 · 김경협 · 한명숙 · 부좌현 · 배재정 · 전순옥 · 한정애 · 배기운 · 정진후 · 은수미 · 송호창 의원 발의) 12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관영 · 김광진 · 김경협 · 김용익 · 이미경 · 장하나 · 전순옥 · 추미애 · 홍영표 · 한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69) 12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관영 · 김용익 · 김현미 · 박민수 · 박주선 · 박지원 · 배재정 · 신계륜 · 신성범 · 심상정 · 이미경 · 이인영 · 임수경 · 장하나 · 전순옥 · 정성호 · 진선미 · 최원식 · 홍영표 · 홍의락 의원 발의)(의안번호 10432) 12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이인영 · 장하나 · 김관영 · 민병두 · 홍영표 · 심상정 · 배재정 · 전순옥 · 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63) 12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한정애 · 심상정 · 김광진 · 이해찬 · 추미애 · 배기운 · 윤후덕 · 한명숙 · 이찬열 · 장하나 · 남인순 의원 발의) 12
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 · 주호영 · 함진규 · 문대성 · 박대동 · 서용교 · 이채익 · 김세연 · 김재원 · 이인제 · 김영우 의원 발의) 12
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강기운 · 김기선 · 김성찬 · 이에리사 · 김진태 · 박성호 · 장윤석 · 윤영석 · 이우현 · 김태원 의원 발의) 12
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김상희 · 김승남 · 김재운 · 민홍철 · 박남춘 · 부좌현 · 안규백 · 원혜영 · 윤관석 · 이목희 · 이상민 · 이해찬 · 전순옥 · 정성호 의원 발의) 12

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 · 안덕수 · 이한성 · 정희수 · 김을동 · 유승민 · 이철우 · 이재영 · 권성동 · 한선교 의원 발의) 12
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이자스민 · 김영환 · 염동열 · 김광진 · 이한성 · 유승민 · 조명철 · 권은희 · 이만우 · 류지영 의원 발의) 12
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김제남 · 심상정 · 정진후 · 서기호 · 박원석 · 배재정 · 장하나 · 이목희 · 김현미 · 진순옥 · 강동원 · 홍영표 · 최민희 의원 발의) 12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김기선 · 정갑윤 · 김명연 · 이학재 · 최봉홍 · 안홍준 · 박덕흠 · 심학봉 · 민현주 · 홍영표 · 김세연 · 유승우 · 나경원 · 강기윤 · 박민식 · 김상민 · 이종훈 · 신의진 · 양창영 · 윤상현 · 이노근 · 주영순 · 이자스민 · 강석호 · 김용태 의원 발의) 12
6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장하나 · 심상정 · 유은혜 · 배재정 · 전정희 · 진순옥 · 김제남 · 진선미 · 박홍근 · 이미경 의원 발의) 12
7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이찬열 · 최원식 · 배재정 · 한명숙 · 배기운 · 부좌현 · 장하나 · 홍영표 · 진순옥 · 백재현 의원 발의) 13
7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정의화 · 이노근 · 김을동 · 정희수 · 함진규 · 김태원 · 홍문중 · 이완구 · 이에리사 의원 발의) 13
7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부좌현 · 진선미 · 김용익 · 박주선 · 추미애 · 배기운 · 윤후덕 · 배재정 · 박홍근 · 진순옥 · 정진후 · 이해찬 · 이미경 · 장하나 · 김상희 · 심상정 · 이상직 · 이상규 · 김광진 · 김재윤 · 서영교 · 정성호 의원 발의) 13
7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 · 배기운 · 부좌현 · 박혜자 · 양승조 · 이자스민 · 장하나 · 정청래 · 전정희 · 백재현 의원 발의) 13
7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양승조 · 김영환 · 배기운 · 배재정 · 김윤덕 · 강기정 · 장하나 · 김광진 · 정진후 · 강동원 · 유성엽 · 이찬열 의원 발의) 13
7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 · 서청원 · 정성호 · 이만우 · 최봉홍 · 서용교 · 이노근 · 박인숙 · 박창식 · 정의화 · 조명철 · 염동열 · 이학재 · 신경림 · 김정록 · 김영우 · 안덕수 · 신의진 · 이철우 · 안효대 · 문대성 · 정문헌 · 심윤조 · 정우택 · 황인자 · 한기호 · 민현주 · 이운룡 · 황주홍 의원 발의) 13
7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황인자 · 이종진 · 홍문표 · 서상기 · 이명수 · 조현룡 · 김춘진 · 김명연 · 염동열 · 황영철 · 李宰榮 의원 발의) 13
7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 · 이만우 · 황주홍 · 이한성 · 이에리사 · 권은희 · 신경림 · 손인춘 · 박민수 · 안덕수 의원 발의) (의안번호 11264) 13
7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 · 박윤옥 · 김우남 · 황주홍 · 이이재 · 이강후 · 안효대 · 이현재 · 황인자 · 김명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47) 13
79.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 · 김경협 · 김윤덕 · 박수현 · 박주선 · 배재정 · 백재현 · 신경민 · 이석현 · 이인영 · 장하나 · 정성호 · 진선미 · 최원식 의원 발의) 13
80.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 · 임수경 · 진순옥 · 박주선 · 김성곤 · 이만우 · 부좌현 · 배기운 · 이상직 · 박혜자 의원 발의) 13
8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 · 심상정 · 부좌현 · 배기운 · 유기

홍 · 안규백 · 박민수 · 진선미 · 이상직 · 홍종학 · 장하나 · 정성호 · 송호창 · 서영교 의원 발의) …… 13

8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 · 배기운 · 김경협 · 전순옥 · 김광진 · 부좌현 · 김재윤 · 장하나 · 최민희 · 이목희 · 전정희 · 김관영 · 김승남 의원 발의) …… 13

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 · 안덕수 · 이한성 · 정희수 · 김을동 · 유승민 · 이철우 · 이재영 · 권성동 · 한선교 의원 발의) …… 13

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 · 강기정 · 이춘석 · 서영교 · 김윤덕 · 정청래 · 김춘진 · 배기운 · 송호창 · 장하나 의원 발의) …… 13

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 · 주영순 · 류지영 · 박창식 · 이만우 · 황인자 · 송영근 · 윤명희 · 정희수 · 문대성 의원 발의) …… 13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 · 안덕수 · 이한성 · 정희수 · 김을동 · 유승민 · 이철우 · 이재영 · 권성동 · 한선교 의원 발의) …… 13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88.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한정애 · 박완주 · 배재정 · 진선미 · 황주홍 · 백재현 · 신계륜 · 홍영표 · 강동원 · 김기준 · 김경협 · 이학영 · 윤후덕 · 김우남 · 박영선 · 이인영 · 이석현 · 조정식 · 이미경 · 김광진 · 박남춘 · 유성엽 · 남인순 의원 발의) …… 14

8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은수미 · 김경협 · 심상정 · 배기운 · 부좌현 · 정진후 · 서기호 · 한명숙 · 전순옥 · 박원석 · 이해찬 의원 발의) …… 14

9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 · 김승남 · 김영환 · 김윤덕 · 박민수 · 박수현 · 박주선 · 이종걸 · 추미애 · 홍문표 의원 발의) …… 14

9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 · 부좌현 · 이원욱 · 김성곤 · 강기정 · 강창일 · 오영식 · 이상민 · 정청래 · 주승용 의원 발의) …… 14

92.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송호창 의원 대표발의)(송호창 · 전병헌 · 최민희 · 김영록 · 김춘진 · 박주선 · 심재권 · 안규백 · 윤호중 · 이석현 의원 발의) …… 14

9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이완영 · 김상훈 · 김기선 · 김한표 · 강기운 · 김희선 · 박명재 · 이이재 · 송영근 의원 발의) …… 14

9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9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 · 이상민 · 안규백 · 전순옥 · 김광진 · 정성호 · 장하나 · 조정식 · 유은혜 · 이해찬 · 윤후덕 · 서기호 · 오영식 · 남인순 · 김승남 · 김재윤 · 박남춘 · 이목희 의원 발의) …… 14

96.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결의안(박원석 의원 외 14인 발의) …… 14

97. 행정입법 검토의 건 …… 14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22

98.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2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 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기국회도 이제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에 예산안 심사 등으로 9월부터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

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국회가 구성된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법률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하게 될 법률안은 국민의 실생활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개선과 다양한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은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법률안이 충실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해서 심사할 안건은 환경부 소관 법률안 30건과 결의안 1건,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64건과 결의안 1건, 그리고 환경부와 기상청 및 고용노동부 소관 행정입법 검토의 건 등 총 97건입니다.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97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으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상정의 건

(10시14분)

○위원장 김영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된 안건 중 제47항과 제94항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후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위 법률안은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위 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이진복 · 김태원 · 심윤조 · 이종훈 · 신동우 · 염동열 · 이종진 · 손인춘 · 박상은 · 이노근 · 문대성 의원 발의)
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 · 강기정 · 이상직 · 박홍근 · 배기운 · 강동원 · 조정식 · 홍의락 · 최민희 · 박민수 · 김관영 의원 발의)
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 전순옥 · 장하나 · 전정희 · 김광진 · 김민기 · 강창일 · 이원욱 · 박홍근 · 김윤덕 의원 발의)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

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 · 이찬열 · 최원식 · 배재정 · 전순옥 · 정성호 · 부좌현 · 황주홍 · 박주선 · 전정희 · 이한성 · 김제남 의원 발의)

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 · 정문현 · 박창식 · 서용교 · 양창영 · 김을동 · 김성태 · 이상일 · 정희수 · 송영근 · 윤명희 의원 발의)
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 · 윤재옥 · 박명재 · 이한성 · 정성호 · 박인숙 · 이에리사 · 문대성 · 강기운 · 이노근 의원 발의)
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 · 이우현 · 송영근 · 홍지만 · 안덕수 · 유성엽 · 김승남 · 최규성 · 안효대 · 윤명희 · 유승우 의원 발의)
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 · 이명수 · 권성동 · 정희수 · 류지영 · 송영근 · 김기선 · 최봉홍 · 하태경 · 김세연 의원 발의)
1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송영근 · 김종태 · 윤명희 · 정희수 · 이한성 · 민병주 · 문정림 · 장윤석 · 김무성 · 류지영 · 김장실 의원 발의)
1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 · 최재성 · 이종결 · 이상직 · 박홍근 · 이원욱 · 박주선 · 노영민 · 김용익 · 강동원 · 배재정 · 이미경 · 박원석 · 배기운 · 김재운 · 김동철 · 장하나 · 이학영 · 이석현 · 전순옥 · 이목희 · 홍영표 · 김미희 · 정진후 · 인재근 · 이인영 · 이윤석 · 진성준 · 김현미 · 황주홍 · 변재일 · 김기식 · 강기정 · 노웅래 · 김광진 · 윤관석 · 이해찬 · 안민석 · 남인순 · 유성엽 · 한명숙 · 홍의락 · 부좌현 · 박남춘 · 신경민 · 우상호 · 김성주 · 우원식 · 심상정 · 서영교 · 김승남 · 심재권 · 박영선 의원 발의)
1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김광진 · 김기식 · 김재운 · 박남춘 · 박민수 · 박주선 · 전순옥 · 전해철 · 정진후 · 진선미 의원 발의)

1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이한성·윤명희·정희수·김무성·김영우·정갑윤·안덕수·이명수·이만우·류지영·이진복·이채익·박명재·김성태·이에리사 의원 발의)
1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양승조·이석현·김경협·배재정·김우남·정호준·김광진·장하나·조정식·원혜영·최동익·진성준·윤관석·박남춘·김재윤·우원식·이용섭·배기운·정세균·홍영표·백재현·윤후덕·정진후·임수경·이원욱·한정애 의원 발의)
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김상훈·권성동·권은희·박대동·경대수·이완영·김제식·박창식·정희수 의원 발의)
16.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정부 제출)
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박창식·김을동·주영순·김정록·박성호·이상일·정문현·홍영표·문대성·김한표·윤명희·정수성·강석훈 의원 발의)
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전순옥·장하나·전정희·김광진·김미희·강창일·이원욱·김우남·박남춘 의원 발의)
1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박창식·강석훈·신성범·윤명희·하태경·주영순·주호영·김상민·정우택·박성호·정갑윤·장윤석·김희국·김정록 의원 발의)(의안번호 8920)
2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박창식·이상일·주영순·유승우·박성호·박윤옥·김을동·김정록·문대성·정갑윤·정문현·강석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57)
2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김기준·최원식·박남춘·부좌현·장하나·우원식·이학영·심상정·정청래·홍영표 의원 발의)
2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박창식·유승우·양창영·김을동·박성호·이상일·김성태·박민식·신경림·문대성·주영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51)
23.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안민석·이연주·이학영·이춘석·배기운·부좌현·김기준·배재정·윤호중·한명숙·이미경·장하나·최민희·김경협·우원식·전정희·박완주 의원 발의)
2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 의원 대표발의)(송광호·강석훈·김성찬·김태원·박윤옥·서병수·서용교·이강후·이자스민·이한성·정의화 의원 발의)
2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김광진·배재정·전정희·정청래·정성호·장하나·손인춘·유성엽·배기운·송호창 의원 발의)
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유대운·배기운·이찬열·부좌현·박남춘·임수경·진선미·문희상·정성호·박영선 의원 발의)
3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하태경·홍문표·이만우·김상훈·김춘진·김영록·정희수·강기윤·김종태 의원 발의)
31. **한·중·일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체결 촉구 결의안**(김영환·김춘진·배재정·부좌현·조정식·박수현·안규백·김재윤·배기운·이종걸·김영록·전순옥·송광호·노영민·김관영·최민희·황주홍·김재경·강기정·추미애·강창일 의원 발의)
3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

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김성태·이종훈·한명숙·김경협·서용교·심상정·홍영표·한정애·김상민·김세연·박윤옥·박창식·유승우·윤명희·김영우 의원 발의)

3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김용익·박홍근·신기남·심상정·우원식·이윤석·장하나·홍영표·한명숙 의원 발의)

3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안규백·박홍근·부좌현·윤후덕·김기준·최원식·황주홍·조정식·박주선·김용익·김광진·정성호 의원 발의)

3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안홍준·오제세·부좌현·김경협·김기준·전순옥·이상직·이목희·안규백·전정희·김상희·김기식·김성곤·김태년·김승남·이해찬·김광진·김재윤·박남춘·황주홍·인재근·남인순 의원 발의)

3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김영록·심상정·이윤석·김경협·이목희·안규백·이인영·한정애·전순옥·윤관석·장하나 의원 발의)

3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김성태·이종훈·한명숙·김경협·서용교·심상정·홍영표·한정애·김상민·김세연·박윤옥·박창식·유승우·윤명희·김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9734)

3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주영순·류지영·박창식·이만우·황인자·송영근·윤명희·정희수·문대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02)

3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부좌현·진선미·김용익·박주선·추미애·배기운·윤후덕·배재정·박홍근·전순옥·정진후·이해찬·이미경·장하나·김상희·심상정·이상직·이상규·김광진·김재윤·서영교·정

성호 의원 발의)

4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김용익·박홍근·신기남·심상정·우원식·이윤석·장하나·홍영표·한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9881)

4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관영·김용익·김현미·박민수·박주선·박지원·배재정·신계륜·신성범·심상정·이미경·이인영·임수경·장하나·전순옥·정성호·진선미·최원식·홍영표·홍의락 의원 발의)(의안번호 10433)

4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한정애·심상정·김광진·이해찬·추미애·배기운·윤후덕·한명숙·이찬열·남인순·장하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89)

4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이찬열·최원식·배재정·한명숙·배기운·부좌현·장하나·홍영표·심재권·이석현·김기준·박남춘·김광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0647)

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이노근·이명수·염동열·조현룡·함진규·조해진·이철우·김정록·박윤옥 의원 발의)

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홍종학·윤후덕·장하나·박민수·김광진·윤관석·남인순·유성엽·김성곤·서용교 의원 발의)

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김영록·심상정·이윤석·김경협·이목희·안규백·이인영·한정애·전순옥·윤관석·장하나 의원 발의)

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박병석·김기준·박민수·강기정·이원욱·정세균·홍익표·은수미·김성주·이미경·임수경·박주선·권성동 의원 발의)

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이이재·이채익·이노근·김태원·박명재·김을동·염동열·김

명언·정희수·이완구 의원 발의)

- 5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류지영·정의화·문정립·조명철·최동익·이만우·이한성·안종범·박주선 의원 발의)
- 5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김제남·심상정·남인순·신경민·박민수·김광진·배재정·부좌현·배기운·정진후·전정희·김상희·이상민 의원 발의)
- 5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도종환·민병두·배재정·신계륜·심상정·은수미·이석현·이인영·홍영표 의원 발의)
- 53. **국외 건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주영순·서용교·이강후·김무성·최봉홍·김용태·정우택·염동열·김태흠 의원 발의)
-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배기운·박홍근·주승용·최규성·박민수·이미경·김광진·윤호중·이학영 의원 발의)
-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박원석·서기호·김상희·김제남·심상정·유은혜·장하나·박홍근·유기홍 의원 발의)
-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이해찬·윤호중·김상희·김선동·유대운·배기운·김재윤·부좌현·배재정·안민석·박홍근·한정애 의원 발의)
- 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심상정·김경협·한명숙·부좌현·배재정·전순옥·한정애·배기운·정진후·은수미·송호창 의원 발의)
-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관영·김광진·김경협·김용익·이미경·장하나·전순옥·추미애·홍영표·한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69)
-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관영·김용익·김현미·박민수·박주선·박지원·배재정·신계륜·신성범·심상정·이미경·이인영·임수경·장하나·전순옥·정성호·진선

미·최원식·홍영표·홍의락 의원 발의)(의안번호 10432)

-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이인영·장하나·김관영·민병두·홍영표·심상정·배재정·전순옥·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63)
-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한정애·심상정·김광진·이해찬·추미애·배기운·윤후덕·한명숙·이찬열·장하나·남인순 의원 발의)
- 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주호영·함진규·문대성·박대동·서용교·이채익·김세연·김재원·이인제·김영우 의원 발의)
- 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김기선·김성찬·이에리사·김진태·박성호·장윤석·윤영석·이우현·김태원 의원 발의)
- 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김상희·김승남·김재윤·민홍철·박남춘·부좌현·안규백·원혜영·윤관석·이목희·이상민·이해찬·전순옥·정성호 의원 발의)
- 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안덕수·이한성·정희수·김을동·유승민·이철우·이재영·권성동·한선교 의원 발의)
- 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이자스민·김영환·염동열·김광진·이한성·유승민·조명철·권은희·이만우·류지영 의원 발의)
- 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김제남·심상정·정진후·서기호·박원석·배재정·장하나·이목희·김현미·전순옥·강동원·홍영표·최민희 의원 발의)
-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김기선·정갑윤·김명연·이학재·최봉홍·안홍준·박덕흠·심학봉·민현주·홍영표·김세연·유승우·나경원·강기윤·박민식·김상민·이종훈·신의진·양창영·윤상현·이노근·주영순·이자스민·강석호·김용태 의원 발의)
- 6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장하나 · 심상정 · 유은혜 · 배재정 · 전정희 · 전순옥 · 김제남 · 진선미 · 박홍근 · 이미경 의원 발의)

7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이찬열 · 최원식 · 배재정 · 한명숙 · 배기운 · 부좌현 · 장하나 · 홍영표 · 전순옥 · 백재현 의원 발의)

7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정의화 · 이노근 · 김을동 · 정희수 · 함진규 · 김태원 · 홍문종 · 이완구 · 이예리사 의원 발의)

7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부좌현 · 진선미 · 김용익 · 박주선 · 추미애 · 배기운 · 윤후덕 · 배재정 · 박홍근 · 전순옥 · 정진후 · 이해찬 · 이미경 · 장하나 · 김상희 · 심상정 · 이상직 · 이상규 · 김광진 · 김재윤 · 서영교 · 정성호 의원 발의)

7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 · 배기운 · 부좌현 · 박혜자 · 양승조 · 이자스민 · 장하나 · 정청래 · 전정희 · 백재현 의원 발의)

7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양승조 · 김영환 · 배기운 · 배재정 · 김윤덕 · 강기정 · 장하나 · 김광진 · 정진후 · 강동원 · 유성엽 · 이찬열 의원 발의)

7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 · 서청원 · 정성호 · 이만우 · 최봉홍 · 서용교 · 이노근 · 박인숙 · 박창식 · 정의화 · 조명철 · 염동열 · 이학재 · 신경림 · 김정록 · 김영우 · 안덕수 · 신의진 · 이철우 · 안효대 · 문대성 · 정문헌 · 심운조 · 정우택 · 황인자 · 한기호 · 민현주 · 이운룡 · 황주홍 의원 발의)

7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황인자 · 이종진 · 홍문표 · 서상기 · 이명수 · 조현룡 · 김춘진 · 김명연 · 염동열 · 황영철 · 李宰榮 의원 발의)

7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 · 이만우 · 황주홍 · 이한성 · 이예리사 · 권은희 · 신경림 · 손인춘 · 박민수 · 안덕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1264)

7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 · 박윤옥 · 김우남 · 황주홍 · 이이재 · 이강후 · 안효대 · 이현재 · 황인자 · 김명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47)

79.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 · 김경협 · 김운덕 · 박수현 · 박주선 · 배재정 · 백재현 · 신경민 · 이석현 · 이인영 · 장하나 · 정성호 · 진선미 · 최원식 의원 발의)

80.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 · 임수경 · 전순옥 · 박주선 · 김성곤 · 이만우 · 부좌현 · 배기운 · 이상직 · 박혜자 의원 발의)

8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 · 심상정 · 부좌현 · 배기운 · 유기홍 · 안규백 · 박민수 · 진선미 · 이상직 · 홍종학 · 장하나 · 정성호 · 송호창 · 서영교 의원 발의)

8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 · 배기운 · 김경협 · 전순옥 · 김광진 · 부좌현 · 김재윤 · 장하나 · 최민희 · 이목희 · 전정희 · 김관영 · 김승남 의원 발의)

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 · 안덕수 · 이한성 · 정희수 · 김을동 · 유승민 · 이철우 · 이재영 · 권성동 · 한선교 의원 발의)

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 · 강기정 · 이춘석 · 서영교 · 김윤덕 · 정청래 · 김춘진 · 배기운 · 송호창 · 장하나 의원 발의)

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 · 주영순 · 류지영 · 박창식 · 이만우 · 황인자 · 송영근 · 윤명희 · 정희수 · 문대성 의원 발의)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 · 안덕수 · 이한성 · 정희수 · 김을동 · 유승민 · 이철우 · 이재영 · 권성동 · 한선교 의원 발의)

-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8.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한정애·박완주·배재정·진선미·황주홍·백재현·신계륜·홍영표·강동원·김기준·김경협·이학영·윤후덕·김우남·박영선·이인영·이석현·조정식·이미경·김광진·박남춘·유성엽·남인순 의원 발의)
- 8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은수미·김경협·심상정·배기운·부좌현·정진후·서기호·한명숙·전순옥·박원석·이해찬 의원 발의)
- 9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김승남·김영환·김윤덕·박민수·박수현·박주선·이종걸·추미애·홍문표 의원 발의)
- 9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부좌현·이원욱·김성곤·강기정·강창일·오영식·이상민·정청래·주승용 의원 발의)
- 92.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송호창 의원 대표발의)(송호창·전병헌·최민희·김영록·김춘진·박주선·심재권·안규백·윤호중·이석현 의원 발의)
- 9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이완영·김삼훈·김기선·김한표·강기윤·김희선·박명재·이이재·송영근 의원 발의)
- 9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이상민·안규백·전순옥·김광진·정성호·장하나·조정식·유은혜·이해찬·윤후덕·서기호·오영식·남인순·김승남·김재윤·박남춘·이목희 의원 발의)
- 96.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결의안**(박원석 의원 외 14인 발의)
- 97. **행정입법 검토의 건**

(10시15분)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97

항까지 94건의 법률안과 2건의 결의안 그리고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1항까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십시오.

은수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의원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입니다.

오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84년 12월 3일 새벽 인도 보팔시에 소재한 미국 유니언카바이드사의 살충제 공장에서 메틸이소시아네이트를 포함한 유독가스 45t이 누출되어 2시간 동안 6900명이 사망하고 중·경상자와 성장이 멈춰 버린 어린이 50여만 명이 피해를 입는 세계 최악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변 지역은 오염이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고 손해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계기로 1986년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다음 해인 1987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유독가스인 불산 24t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기존 인도 보팔시의 사고와 달리 20분 만에 800m 내의 주민이 소개되고 사망자 없이 100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 전문가들은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법’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2012년 9월 경북 구미의 휴브글로벌사에서 미국과 같은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누출량은 미국의 절반에 못 미치는 10여t이었지만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나서 주민대피령은 4시간 후에 내려졌고 그 사이에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18명이 입원하고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의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주민보상액만 380억에 이릅니다.

한두 달 상간 여기저기에서 정부와 관련 부처,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와 대응체계의 허술함이 지적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화성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남양주 빙그레 암모니아 누출사고, 여수 조선소 암모니아 누출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

서 정부의 재발 방지 약속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화학물질사고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미국 텍사스의 1987년 불산 누출 사건이 보여 주듯이 지역 주민에게 그 위험성을 과감 없이 알리고 정부,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일원화된 응급대응계획인 지역사회 알 권리법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은 그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크게 화학물질의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기업이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 사고 대응계획과 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에 대한 신속한 관련 정보의 고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릴 것은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화학물질 사고의 잠재적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은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사회의 알 권리 보장을 하는 것이 화학물질의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대책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바, 정부가 제대로 기업을 감독하게 만들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화학물질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회부된 법안이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은수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제16항·제25항·제27항과 제28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 심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상정 법률안 중 정부가 제출한 5개 법률안을 제안설명 드리겠

습니다.

먼저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은 일간 1조 원,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을 자원과 에너지수입에 지출해야 하는 자원 다소비국이고 에너지 다소비국으로서 자연에서 채취한 자원과 에너지는 가능한 경제활동 과정에 머물게 하면서 선순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바, 이를 위하여 국가의 중장기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사업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소각이나 매립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재활용 비용에 버금가게 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되 중소기업에는 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람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하게 된 폐기물로서 시장성·안전성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로서의 규제를 적용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령에 적시된 용도 또는 방법에 한해서만 재활용을 허용하는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은 재활용을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당위성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함에 따라 환경과 건강보호를 담보하는 재활용 방법은 이를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환경과 건강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토양이나 지하수 등에 직접 접촉시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환경위해성 검토를 미리 받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중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정부가 표본조사하여 오염기준 초과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 되어 있으나 다종다양한 건축자재 중 극히 일부만 표본조사 하기에 행정력이 태부족한바, 건축자재 수입·제조업자로 하여금 일정 요건 이상의 사용자에게 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여부를 시험기관에서 확인받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라돈이 고농도로 발생하는 지역을 라돈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1992년에 도입되었으나 시설물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이 하수도요금과 중복된

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물 부과 징수 근거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면적이 100만㎡ 이상인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개발 시 개발면적을 기준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발생 폐기물량에 관계없이 설치하게 하는 결과가 되고 있어 앞으로는 개발 면적과 폐기물 발생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해 당사자, 전문가, 관계 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법률안들이니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환경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25건의 의원발의 법률안과 결의안에 대하여는 발의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바탕화면에 있는 제안설명 폴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한공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1항까지 30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97항의 행정입법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퇴비·액비화 및 정화처리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으므로 임의규정이지만 처리방식의 우선순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보다 지자체에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기상산업진흥법에 규정된 기상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기상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이나 기상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에 해당하고 기상

산업진흥법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해당하여 기본법과 특별법을 통합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일반인과 사업자에 대한 규정은 취지에 맞도록 각각의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건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부 제출안은 제명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실내공기질 관련 일반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며 라돈관리지역 지정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 적용 대상이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대중교통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민현주 의원안을 참고해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분산된 공기질 관리를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라돈계획 수립 시 주택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권역별 자원관의 상임이사 수를 4명으로 정하고 있으나 유사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수에 비하여 과다한 측면이 있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건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직원임용의 특례는 과도한 혜택에 해당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건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김종태 의원안은 국가광역상수도 운영·관리하는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수도관리 업무를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위탁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책임 소재 불명확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3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은수미 의원안은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로 하여금 화학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여부는 화학사고의 발생 및 피해 현황, 화학사고의 특수성, 화학사고 대응 관련 자치단체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하나 의원안은 화학사고로 인한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화학

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대상정보에 화학사고 발생이력을 포함하고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 1월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건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김재원 의원안은 일정 조건을 전제로 풍력발전을 허용하려는 것이나 생태·자연도의 권역 구분은 개발행위의 가능 여부를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사업에 대해서만 설치 가능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생태·자연도 권역 구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은 신설되는 용어의 정의와 제도가 폐기물 관련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동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 법률안 4건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므로 병합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건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최봉홍 의원안은 폐농약용기의 수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약용기 회수 촉진보증금을 도입하려는 것이나 농약가격의 상승으로 인식될 수 있고 농약판매상이 폐농약용기 회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건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2013년 12월 31일 발의한 최봉홍 의원안은 폐자동차의 재활용 책임 및 폐냉매의 적정처리 의무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일원화하고 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을 신설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지만 자동차 제조 대기업에 의한 폐자동차 시장의 독점 우려 등을 이유로 관련 업계에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014년 5월 28일 발의한 최봉홍 의원안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정기준을 제품의 출고량에서 매입량으로 변경하여 적정수준의 회수의무량을 부과하려는 것은 타당

하지만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사업자 등에게 제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월 25일 발의한 최봉홍 의원안은 폐전기·전자제품과 중고 전기·전자제품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재사용업과 재사용품 수출업의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재사용업자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중고 전기·전자제품을 동 법률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격상시키고 동 법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명을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나 현재 국회에 구성돼 운영 중인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부안은 재활용 허가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로 변경하여 재활용의 방법을 확대하려는 것이나 폐기물의 재활용은 국민의 생명과 환경보호 등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규제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2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부 제출안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시 단지의 규모와 폐기물의 발생량을 함께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법정기간 만료 후에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대상시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나 시설운영자에게 미치는 부담과 함께 현행 협의제도를 활용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중·일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체결 촉구 결의안은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려는 것이나 작년 12월 본회의에서 채택된 바 있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과 그 내용이 유사하고 동 결의안에 따라 환경부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공동 합의문 채택, 한중 정상회담 시 한중환경협력 양해각서 서명 등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회 차원에서 다시 촉구결의안을 채택할 필요성이 적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31일부터 2014년 5월 30일까지 제·개정되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행정입법이 위임입법의 원리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행정입법은 27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보면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행정입법 4건,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입법 7건, 포괄적 재위임 행정입법 1건, 행정입법의 부작위 5건, 명확성의 원칙 위배 등 내용이 불합리한 행정입법 3건, 기타 법령체계상 부적합한 행정입법 7건 등입니다.

정부는 향후 소관 행정입법 제·개정 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특히 개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주 한공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96항까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9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의원 존경하는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최저근로조건은 법률로써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노동의 권리는 실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인권의 근간을 이루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법률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227만 명, 즉 12.1%에 해당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공공기관 종사자 중 13%인 14만 명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시간제 203만 명 중 39.2%가 현재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들이 사실은 사회적 취약계층입니다. 비정규직 비중이 약 92.9%, 55세 이상 고령자와 25세 미만 청년이 42.5%와 20.0%입니다. 통상의 고용형태에 있는 근로자들보다 정작 법률의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제도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해법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해하고 또한 그런 무권리의 상황에서 본인들이 요구를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할 때 우리의 노동권 보호기제가 정확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른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정부가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의무교육을 받는 시기부터 이후 성인이 된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노동인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권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나 EU 경우는 초등학교서부터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연방주에 따라서 다르긴 하나 상당수의 주가 대학마다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있어서 취업 알선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받는 잘못된 인권사각지대의 해소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

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 위원회를 두고 동시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은 초·중등 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에 반영토록 노력할 의무를 두었습니다.

한편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고용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학교, 기능대학,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를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되 제가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청소년 및 청년들이 알바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첫 노동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자기 자신이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인권이 훼손되고 있고 이렇게 권리를 모르는 청소년 혹은 청년노동자들이 성장해서 성인노동자가 됐을 때는 더 심각한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기에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은수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하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의원 존경하는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2014년 4월 24일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우리 환노위에서 통과시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3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의 근거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 퇴직급여를 피보험자들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수령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 제13조2항은 출국만기보험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3조3항의 ‘출국한 때부터 14일’ 조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명시된 퇴직금의 지급 시기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는 최초 개정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바입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미등록 체류자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미등록의 주요 발생 사유를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 기간이 끝나고 미출국으로 인해 미등록으로 남는 경우보다는 임금체불이나 사업장 변경횟수 제한 그리고 여러 가지 인권 문제 등으로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들을 축소하는 데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여 2~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동안 그들에게 퇴직금이 바로 유일한 생계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법으로 보장된 퇴직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의 생존권이 중대하게 침해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출국만기보험을 개정하며 설명한 취지를 보면 사업장 변경 시마다 출국만기보험금을 받기보다는 전체를 모아서 출국할 때 지급받는 것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서 본국 정착 자금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저금의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취지 자체가 위법적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 퇴직금을 그들의 출국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억지로 압류를 하

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일하고 있는 비전문취업(E-9)비자 인력은 26만 4112명이며 방문취업(H-2) 인력은 28만 2944명으로 약 55만명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인력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근로기준법을 평등하게 공통으로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와 또 우리 내국인근로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의 퇴직금 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이는 고용허가제 10주년을 스스로 자축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라고 자평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탄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부디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 그것을 평가받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장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 48항, 제87항, 제9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존경하는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재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이 종결된 이후 후유증상으로 추가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에서 분담한다는 원칙하에 처음 2년 동안은 산재보험에서 지원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

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실직 전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하면서 상한액은 1일 4만 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하고 있어 상하한액 역전 현상과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상한액은 시행령을 개정하여 1일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업이 파산하거나 도산한 경우에만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일부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하여 임금지급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영난을 겪는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해 주는 지원사업의 대상을 퇴직근로자에서 재직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60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 등에 대하여는 발의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의 노트북 바탕화면에 있는 제안설명 폴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양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 32항부터 96항까지 64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 그리고 97항의 행정입법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33항, 37항, 40항 최봉홍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건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하려는 것으로 사업주의 부담과

특수형태근로자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및 수급 요건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의사일정 38항, 39항, 47항, 48항, 41항부터 45항 가운데 제38항 최봉홍 의원안은 우수한 실적을 보인 부정수급 조사관에게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국민연금 등 다른 보험 부정수급 조사관 등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1항 한정애 의원안은 가족이 재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휴직급여 및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가의 재난구호 의무를 고려할 때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쪽의 제47항 김영주 의원안은 실직한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48항 정부안은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는 것으로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현상을 방지하려는 취지는 이해되나 개정안에 따르면 상한액과 하한액의 기준이 상이하여 2021년경에 상하한액 역전현상이 재발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하한액의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쪽 중간의 의사일정 제50항부터 52항까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가운데, 6쪽입니다. 제52항 한정애 의원안은 고용형태 현황 공시에 있어서 미공시나 허위공시의 경우 과태료로 제재하는 것으로 공시제도의 강제력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미공시와 달리 허위공시의 경우에는 상당한 행정력을 필요로 하므로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부터 68항까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7쪽입니다. 제57항 장하나 의원안은 실임금수령액과 실근로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취업규칙이 작성·변경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공시를 통해 적절히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시를 통해 이러한 악용 사례가 근절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기업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제58항 한정애 의원안은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질병을 입었을 경우에 30일 이내의 병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경우나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으나 제도 도입에 있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중간 제60항 한정애 의원안과 제68항 김성태 의원안은 근로자에게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법정휴일로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근로자 간 차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차별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쪽의 제66항 이자스민 의원안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을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모성보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이 늦어지는 등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의사일정 제79항 은수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과 노동관계법령 등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노동관 및 직업관 함양을 유도하고 근로자가 근로자로서 갖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의사일정 제84항부터 87항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가운데 85항 최봉홍 의원안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적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게 인사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반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직무의 충실에 대한 포상이나 우대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제87항 정부안은 산재근로자가 후유증상으로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후유장애의 경우 일정 기간 산재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쪽의 89항부터 91항까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89항 장하나 의원안과 90항 김영록 의원안은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 시기를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서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불법체류 예방이라는 현행 조항의 취지와 이로 인해 외국인근로자가 입게 되는 권리의 제한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7쪽의 의사일정 제93항과 94항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권성동 의원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자료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신속과 정확한 수행의 이점을 확보하고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94항 정부안은 소액채당금제도의 신설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내용으로 체불 상태를 속히 해소하여 체불 근로자를 구제하고 부정수급 행위자에게 책임을 가중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7쪽 마지막 단의 의사일정 제95항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결정하는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여 최저임금의 하한을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50% 상당으로 하려는 것으로 최저임금을 통상임금과 연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국의 선례를 검토한 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입법에 관해서는 지적된 건수가 모두 10건으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사례가 5건, 내용이 불합리한 사례가 1건, 기타 법령체계의 부적합 사례가 2건, 법률의 시행일을 경과하여 시행된 행정입법이 2건입니다. 동일한 조치를 환경부가 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주 김양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0시57분)

○위원장 김영주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안 심사 중입니다만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 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98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구성하였지만 법안심사소위 등은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아직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오늘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새누리당 권성동 위원님으로 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는 8인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새누리당 최봉홍 위원님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8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소위원회 구성 내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소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일부 소위원회 위원의 사임이나 보임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즉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해서 결정하고 이를 위원회에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와 기상청 및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과 결의안 그리고 행정입법에 대한 대체토

론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심상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선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갑 심상정입니다.

우선 법안 논의인데 그 전에 현안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법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심상정 위원** 쌍용자동차 건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심상정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보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노사가 힘을 합쳐서 경쟁력을 키워서 밖에 나가 있는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정 위원** 헌법 27조 3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고건이 지금 5년 만에 판결이 났어요. 이게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저는 그동안에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좀 묻고 싶고 또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손배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꽤 많은 액수가 손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46억 8000이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심상정 위원** 그런데 제가 판결 이후에 쌍용자동차 실적을 죽 보니까 날로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7월 달 단체교섭에서는 사측이 노조에 통상임금 확대안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면 충분히 153명 복직하고도 남는 액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저희 은수미 의원 등과 함께 저희가 마힌드라까지 가서 회장을 만난 적이 있었고 그 회장도 사법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9월 달 당시 합의, 노사 합의를,

2009년 합의를 유념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큰 틀에서 이 복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렇게 회장이 직접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 통합적인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가 그간에도 어쨌든 경영이 정상화되고 또 해고되거나 무급휴직된……

○**심상정 위원** 지금 쌍용자동차 경영 상황은 아직 살펴보지 못하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씩 경영 상황이 좋아진 측면도 있고 그래서 무급휴직자가 다시 복직된 사례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가 경영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걸 근간으로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 쌍용자동차 문제는 이 자리에 지난번 전반기 때 환노위에서 활동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통령선거 시기에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정조사도 의결했던 바가 있고, 공약으로 내걸은 바가 있고 이 문제는 법적인 결과와 상관없이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고 또 정부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두루 한번 좀 살펴보시고 현재의 쌍용자동차 경영 상황까지를 고려해서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예, 검토를 하셔서 그 결과를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심상정 위원**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심상정 위원** 어제 강릉시에서 포스코 토양 및 지하수 오염정화 민관공동대책협의회 구성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심상정 위원** 제가 이거 국정감사 때 제시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수용한 데 대해서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 민

관공동대책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제는 좀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심상정 위원** 그러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주체들이 참여를 해야 실효성 있는 민관대책협의체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폐놀유출사고 축소·은폐 문제에 대해서 1년 넘게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강릉 환경운동연합 관계자하고 주민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하고 강릉시에 불편한 사람들,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 빼고 협의체 한다고 하면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원주지방환경청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강릉시에서 발표하는 것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주지방환경청이 협의체에 참여를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환경오염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관공동대책협의체를 기왕에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매듭을 지을 의지라면 가장 중요한 당사자 주체가, 1년 동안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불편하더라도 그런 시민단체하고 환경부는 같이 참여를 해야 이게 민관이 되는 거지 환경부가 빠져서 자문만 하겠다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면 이게 책임 있게 매듭이 지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구성원을 살펴보면 10명을 구성하는데……

○**심상정 위원** 그 구성원 제가 지금 다 내용을 검토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말씀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0명 중에 옥계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하고 사무국장이 주민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피해를 막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단법인 시민환경센터 사무국장 또 옥계 환경보전협회 회장 이렇게 민간인이 말하자면 4명이 들어가 있고요, 또 전문가로서 관동대학교 교수……

○**심상정 위원** 저기, 장관님!

○**환경부장관 윤성규** 강원도립대학 교수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상정 위원** 저기요, 장관님! 지금 시간이 없

어서 그런데요, 제가 이 내용 다 검토해서 말씀드리고……

저도 이 문제를, 이 문제가 좀 제대로 매듭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제기를 하는 건데, 물론 구색은 다 맞췄습니다. 그러나 가장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이런 문제제기자를 빼놓으면 그 지역사회에서도 설득력이 없고요, 저 같은 사람도 이걸 계속 지켜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환경부하고 두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환경부장관님, 지금 법안 중에 말이죠, 27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이걸 입법취지 설명과는 다르게 이게 사실 관광단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공장이 모두 다 포함되는 거 맞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포함됩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법을 아주 왜곡·축소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배출량과 시설규모 중에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에 폐기물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조건을 두 개 모두 충족할 때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좀 꼼수 법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을 이렇게까지 환경부가 처리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소위에서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검토를 하겠습니까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부가 이런 법안을 이렇게 넣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잠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현재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경주 마우나오션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642만㎡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은 하루에 9t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장을 거대하게 만들어 놓게 돼 있고요, 또 용평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1200만㎡인데 하루에 2t 나옵니다. 경주 감포관광단지는 400만㎡인데 하루에 1t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폐기물 발생량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면적만 하다 보니까 너무 과대시설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면적뿐만 아니라 발생량도 동시에 고려하도록 하는 겁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그러려면 전체적인 내용이 파악되고 이에 대한 영향분석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의료관광단지 개발하겠다고 정부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고려하면 사실 병원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연구 이런 것들이 선행돼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법안을 내셔야지 지금 그런 연구검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저는 상당한 꼼수가 개재된 법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는 이게 연구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발생량을 고려하게 했기 때문에……

○**심상정 위원** 아니, 그건 전혀 아닙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발생량을 고려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화하는……

○**심상정 위원** 환경부가 이에 앞장서시면 안 돼요. 환경부가 환경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규제를 자꾸만 완화하는 차원에서 환경부가 포지션을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가뜰이나 다른 부처에서 지금……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건 전혀 그런 앞장서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심상정 위원** 이 법안은 그런 법안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주 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관련해서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안과 최봉홍 의원님 안 2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정부안에서는 순환자원 사용권고안으로 되어 있고요, 최봉홍 의원님 안은 사용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표 미달성 시인데요. 정부안 같은 경우는 명단 공개이고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순환자금 부과금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정부안에서 보면 지금 기업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부과금 하지 않도록 하는 안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

지요, 장관님?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 부분은 다른 장치가 또 있기 때문에 정부안은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또 외부 국내외 경쟁사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민현주 위원** 장관님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분 관련해서 부담금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이미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민현주 위원** 그렇지요? 안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준용해서 하면 되는데 왜 전반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부담금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기업 보호 아닌가라는 의견인데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소각이나 매립할 때 그것이 재활용 비용보다 싸기 때문에 싼 부분을 부담금으로 거두어들여 가지고 그것을 재활용하는 쪽에 유인하도록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게 경쟁력도 유지가 되고 유리하다라면 기업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그대로 매립이나 소각을 하겠다고 그러면 자기가 그것에 따른 비용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고요. 그렇게 경제의 원리에서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하다 보면 또 경제 메커니즘을 이용한 것이 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민현주 위원**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부담금 부과하고요, 부담금 받아서 목표 달성, 우수한 기업 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고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지금 폐기물처분부담금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왜 기업 부담금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중소기업은 감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 전체에 부담을, 일반화시켜서 이 안을 정부안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아직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또 하나는 고용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지요? AA인데 의무이행 기업이 공공기관은 50인이고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500인 이상이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민현주 위원 그래서 이게 잘 지켜질 경우에는 혜택을 받는 기업이 500인 이상 대기업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에는,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민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AA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안을 내고 있습니다. 500인 이상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잘 지키면 500인 이상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인데 이 500인 이상 기업에게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이 법 취지에 맞으며 이 법은 적극적 고용 개선을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인데,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인데, 그리고 그 노력을 하는 기업들이 사실상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데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또다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혜택을 주는 부분은 중소기업이랄지 또 장애인기업이랄지 이렇게 특정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현주 위원 차라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500인 이상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 조직이 달성을 하지 못했을 때 그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거나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해야지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이것이 저는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을지, 확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의문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AA 대상이 더 잘해서 AA에 들어가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 주고 AA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현주 위원 이 부분은 법안소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러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민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오늘 법안 낸 것 중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냈는데요. 이게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고 상한선을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제도하에서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보다 더 돈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실업자의 구직의욕이나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나올 수 있다 이런 취지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런데요, 이것 실업급여 받는 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게 90일에서 240일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맞습니다.

○우원식 위원 보니까 평균 114일을 하는데 이런 논리로 하면 한 3, 4개월 10만 원 더 받으려고 실업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3, 4개월 더 받으려고 실업에 들어간다고 보다는 실업이 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해 줘서 구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찾는,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소위 거기 일자리를 찾아서 받을 수……

○우원식 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실업급여를 본인의 통상임금의 50%로 책정을 했는데 50%라는 기준은 거의 작동이 안 되고 하한액을 적용받는 비중이 벌써 65%를 넘고 있어서 기본 취지가 너무 왜곡되어 있었다……

○우원식 위원 실업급여가 최소한의 삶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그 얘기는 맞아요. 토요일·일요일 빠지고 하는데 실업급여 하면 토요일·일요일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것 기껏 해 봐야 평균으로 하면

한 4개월 이런 정도인데 이것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대한 생각이고, 아주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주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박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실업에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진단을 전혀 잘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4만 원에서 5만 원 상한선 올리는 것, 4만 원이면, 그분이 통상 받는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니까 이게 209만 원쯤 돼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209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면 한 262만 원인가 이쯤 되거든요. 그 구간 사람들에게 혜택이 더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래도 조금 월급 나온 사람한테는 혜택을 더 주고 그것보다 어려운 최저임금선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주겠다 이런 건데 이것은 그냥 놔두는 게 좋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한액을 적용한 비중이 60%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내년에도 다시 7.2%가 올라가게 되면 상한액이 없어집니다, 하한액 최저기준이 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한액을 놔두고 상한액만 올리는 경우에도 다시 조정을 또 금방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년보다 더 낮게 하지는 않되 하한액을 10% 낮춘다고 그래서 현재보다……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저도 법안소위니까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할 텐데 실업급여와 근로소득을 비교하기 위해서 각자 산출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그리고 실업급여의 최소한의 가치가 과연 실업자에게 높은 건지, 그리고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들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겠다는 노동부 개정안의 근거가 매우 빈약하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그 부분 때문만은 아니고 그것도 한 이유입니다.

○**우원식 위원** 이런 것보다는요, 지금 하셔야 될 게 기초수급생활 대상자 있잖아요. 그분들이 수급, 그러니까 꼭 노동 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랑 같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조금만 일을 해도 그냥 수급권에서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EITC제도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

입니다. 그런 것을 해야 근로의욕이 고취되지 수급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근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노동부는 검토해 볼 때, 정말 벼룩의 간을 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겠다는 것을 이런 데서 찾을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대체토론인데 김재원 의원이 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에 대해서도 풍력발전을 장려한다고 생태자연도 1등급인 지역을 훼손하는 법안이 있어요. 풍력발전을 하는 것은 생태를 잘 보전하고 지구환경을 잘 지키자는 건데 그런 취지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몇 % 되지 않는 1등급을 해쳐 가면서 풍력발전 하는 것은 전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법 검토하면서 문제 제기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고용노동부, 쌍용차 아까 심상정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심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시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방안은 현재 쌍용차의 경영여건이나 판매대수가 높아져서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지금 일 자리를 떠난 분들이 가급적 일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것은 너무나 장관님다운신 말씀인데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죽든지 목숨을 걸든지 하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쌍용차에서 죽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그런 상태인데도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대법원 판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어쨌든 판결이 난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정부 부처 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용노동부·산업자원부 좀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노사한테만 그냥 맡겨 놔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정부 부처가 이런 갈등은 이제 어떻게 해소……

재판은 재판 그대로 끝났습시다만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자기 목숨을 던져 가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소한의 조건들을 마련해 보려고 한 건데 그게 안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지구 바깥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

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부는 뭐 할 건지,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죽음을 선택하면 재판에서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죽어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결국 궁극의 해결책은 경영이 정상화되고 거기에 항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의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종합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경찰이 손배 한 것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우원식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공권력에 관련된 부분이라 저희가 여기서 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원식 위원** 국가가 뭐 하는 겁니까? 국가의 국무 조정 기능이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법을 지켜 가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위원** 법을 지키는데, 법을 지켜야지요. 재판에서 졌어요. 그러면 죽어야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기업이 정상화 되도록 서로 노력을 하고 거기에 지금 일터를 떠난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부장관이예요? 회사 사장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 우리 노동자, 그 어려운 사람들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 보겠다…… 손배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과도한 건지 우리 사회가 많이 공론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손배 취소를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노력해 보겠다 이런 얘기 왜 못합니까? 정부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장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국회에 와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런 방식으로만 하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노사 당사자한테 다 법을 지키는 것이 서로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부분을 늘 강조하고 있고요. 또 그런 갈등이 있을 때도……

○**우원식 위원** 보세요!

○**최봉홍 위원** 다음 진행 하지요.

○**위원장 김영주** 우원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런 갈등도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朱永順 委員** 주영순 위원입니다.

생물자원관에 대해서 당초에 환경부에서 이것을 국가기관으로 하겠다고 많은 공언을 했었는데 낙동강생물자원관이 이제 완공이 되어 가지고 곧 개원을 하게 되니까 이것을 법인화로 지금 가기 위해서 법을 이렇게 하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朱永順 委員** 그러면 호남권 생물자원관도 그 지역 주민들은, 또 도청이나 주민들은 국가기관으로 가기를 지금까지 많이 기대를 했고 하는데 아무런 뭐 없이…… 아마 상주는 의회나 상주시에 가서 많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신 것 같은데 호남권 생물자원관도 일단은 지역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호남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지역민들은 지금 국가기관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국립생물자원관 하면 그것도 국가기관입니다. 공무원 조직이나 아니냐의 차이점이지만 국가기관은 다 국가기관입니다.

○**朱永順 委員** 다음 한 가지는 부처 협의 중에 해수부에서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연구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부처 협의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바다 가까운 연안에 있는 호남권 생물자원관은 실질적으로 기능이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장관님께서 좀 부처 간에 협의를 할 때 환경부의 이야기를 충분히 하셔서 관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것도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해양생물이라고 해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최근 발의되는 많은 노동관계법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기업 규제나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과 기업 규제의 필요성을 혼돈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에 상병휴직을 지나치게 장기간 인정한다든지 근로자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 직업훈련생에 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으로 가져온다든지 또는 정리해고 시 협의 결과에 대한 서면증빙을 요구하는 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여 그 효과성이나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개별 사업장의 노사 관행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그 모든 것을 노동관계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열악한 계층에 대한 최저한의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이랄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또 지나치게 많이 규율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균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朱永順 委員** 그리고 최근 고용노동부가 ‘일·가정 양립’ 캠페인을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국회에서도 여성근로자 보호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상정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들에는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한 것이 많은데 모두 그 기간을 늘리고 늘어난 기간을 유급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많게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30일간 유급으로 주자는 법안까지 있습니다.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한편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성도 있다고 하는데 보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최근 출산·육아와 관련해서 제도 보완이 많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

로 배우자 휴가도 08년도에 무급 3일에서 13년도에 무급 2일, 유급 3일로 바뀌었고 또 금년 10월부터 아빠의 달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보완된 제도들이 우선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朱永順 委員** 저성장시대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세월호 사태에서 비롯된 안전 문제, 일·가정 양립 등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모든 해법을 기업 규제나 부담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에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주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장하나입니다.

먼저 환경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화면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2014년 11월 10일 월요일, 그러니까 지난 주에 한겨레신문 지면에 났던 현대자동차의 광고입니다. 지금 원편의 빨간 동그라미 부분 확대해서 보시면요 하이브리드 특별구매 혜택이라고 해서 ‘소나타 하이브리드 국가보조금 100만 원 선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질문 할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6일 날 예산심사, 이 전체회의장에서 물론 저탄소차협력금 제도화의 대체사업으로서 하이브리드 국고보조 문제가 있다, 전액 삭감 의견들 위원님들이 많이 주셨고요. 환노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같이 하는 게 과도하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0일, 그러니까 이 신문 지면광고가 난 같은 날 예산심사소위가 있었고요. 여기에서도 결국 하이브리드 보조금 지원예산은 쟁점이 돼서 당일 날 결정치 못하고 보류가 된 바 있습니다. 결국 며칠간의 논의 끝에 11월 13일 예산소위를 열어서 이때 70억 원 삭감되는 내용으로 통과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되지도 않았는데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 그보다 빨리 광고를 해서 국민들에게 국가보조금 100만 원을 기업이 선지원한다 이

렇게 하였는데요.

첫째, 이러한 내용이 결정도 안 되었는데 기업이 이러한 것은 문제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환경부가 이러한 내용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적이라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기업이 유리하다 하더라도 정부가 결정할 사항을 아직 결정 안 한 상태에서 한 것은 좀 성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렇지요. 그 점에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고.

첫째, 저는 환경부가 예산도 통과되기도 전에, 국회에서 심의도 마치기 전에 업계가 이런 광고를 왜, 어떻게 냈는지 그래도 연유를 파악하셔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경위를 파악을 하시고요, 국회에 공유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한번 조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리고 또 기업이 이러한 광고를 하고 예산심사도 마치기 전에 환경부의 정책만 가지고 광고를 한 것은 환경부도 태도라든가 적절한 처신은 아니지 않았나 이런 경각심도 스스로 환경부가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리고 다음은요 제가 화관법 개정안 발의한 게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법률 검토안을 저도 받았습시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 ‘환경부가 시행규칙에 기 반영했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습시다.

그리고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환경부가 기 반영했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개정안도 그 점 고려해서 심사하라’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시다.

왜냐면 일단 화관법 시행규칙에 화학물질사고 이력을 담겠다 이런 시행규칙은 반영이 된 게 맞고요. 일부 반영이 맞습시다. 하지만 제가 발의한 내용에서 두 가지 다른 사항, 첫째는 지금 현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와 화학사고 대응 관계기관 또는 국민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토록 되어 있는데 국민은 반드시 알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도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또는’이라는 부분을 국민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꾼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기 반영된 게 아닌 게 맞지요? 기 반영되지 않았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장하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부 검토보고가 ‘일부 반영’으로 되었어야 맞고요.

여기에서 사실 가장 큰 쟁점이 있지 않나…… 지금 국민들에게 이런 화학물질정보를 주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가 뭘까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화학물질정보를 주민이나 이렇게 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진국 중심으로 이미 어느 정도 글로벌 스탠더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에 따라가도록 지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돼서 내년에 시행되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미국의 지역사회 알권리법을 말씀하셔 가지고 환경단체 등 여러 사람들, 전부 대표단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조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선진국 수준에 맞도록 저희가 운영을……

○**장하나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장하나 위원** 지금 미국의 알권리법 그리고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이미 이러한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갖춰 놓고 누구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그 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저도 당장 접속해서 이러한 화학물질정보를 알 수 있고요, 기업의 사고이력도 알 수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개정안에 반영이 꼭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현재는 ‘구축·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화관법, 1월부터 시행되지요? 그런데 이것도 ‘운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 강행규정을 이 법안에 제가 담았습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 검토보고에서 ‘기 반영’ 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 법안소위 때도 그 점을 중심으로 다뤄 볼 것 같습니다. 환경부도 말씀하신 글로벌 스탠더드를 좀 염두에 두셔서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부장관님께도 여쭙겠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들려야 됩니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수많은 희귀병을 앓고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또 사망으로 생을 마감한 이런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 온양공장에

서 일했던 유명화 님 이분은 지금 재생불량성 빈혈로 투병 중이시고요, 또 뇌종양으로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고 이윤정 님 이 두 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불승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무려 3년 7개월 만에 1심 승소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7일 일인데요.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장하나 위원 알고 계시지요?

혹시 상소 준비 중이십니까, 항소를?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공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장하나 위원 아직 결정은 안 하셨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장하나 위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검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에 같은 온양사업장에서 일했던 김지숙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은 적도 있고요. 이런 케이스도 좀 고려를 하시고.

또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에서의 판결문 일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아직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은 인과관계를 추단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 정황으로 참작함이 마땅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 ‘특정 화학물질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이 아직 연구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즉 관련성이 없다 또는 관련성이 낮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산재를 입증 전환, 그러니까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노동자가 어떤 물질을 자기가 만졌는지, 그게 질병과 관련이 있는지 입증하기에는 너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항소를 하심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고 전향적 입장이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최근에 공단에서 2심 패소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안 한 것은 유해물질

하고 질병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 기준하고 이번 건 또 판결의 취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단이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 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2소위에서 파산법 통과되었습니다. 아마 오늘내일 본회의 통과되어 나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 넣었던 것하고 다르게 체당금 받은 분야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내용 좀 검토해서 가지고 시행령 개정할 때 부처 간의 협의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심상정 위원님 말씀 나오시고 했는데 장관님, 쌍용 문제 판결 끝나고 난 뒤에 현재 쌍용의 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보고받으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간략하게 보고받았습니다.

○최봉홍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글썽요, 저희들도……

○최봉홍 위원 안에 팀이 노·노·노·노·사·외부팀 여섯 파트입니다. 바깥의 외부팀은 시민단체나 워니 전부 합쳐 가지고, 정치세력이 뭉쳐 가지고 쳐다만 보고 있고, 정부 보고 하고 있고 노·노·노·노는 새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런 상태로 실권을 쥐고 있는 것은 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현재 있는 노조입니다. 거기에서 합의가 되면 채용이 되고 전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야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다음 특히 손배나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지난번에 국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외부세가 개입되어 가지고 성공적으로 회사와 노동자가 발전해 나오는 회사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를 귀감으로 삼아 가지고 모든 기업이나 노조나 또 사회단체나 정신 차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히 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환경부가 제출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예요, 지금 현행법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서 일정한 의미에서는 환경과 생명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강화되고 진화된 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현재 법을 다시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이런 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거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인영 위원 그 이유가 뭐니까? 짧게 짧게 좀……

○환경부장관 윤성규 재활용은 가능하면 극대화하는 게 지상과제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것 이것만 된다고 하다 보니까 기술개발도 동력이 없고요. 또 한번 개발해 봐도 들어가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 시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인영 위원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두 가지만 우선 확인할게요. 법안소위에서 다시 다루면 되니까.

정부 전체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환경 분야 관련해 가지고 말하자면 선택된 그런 법안은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건 아니고요.

○이인영 위원 전혀 아닙니까? 그 이전부터 미리 준비하셨던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예전부터가 아니라 제가 독일에 있어 봤는데 독일에서도 이 포지티브가 전혀 없는데……

○이인영 위원 일단 아니시면 지금 그것 확인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4월에 용역을 주셨다면서요. 1억 5000만 원 줘서 연구용역을 줬고 이게 내년 3월에 결과가 발표된다면서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내년 3월까지 용역이 지속 됩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을 줬으면 당연히 그 결과를 보고 법 개정을 발의하는 게 상식 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것은 하위법령을 만들 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미리 연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인영 위원 하위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궁금하지 않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왜냐하면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이인영 위원 모범을 만드는 것에 더 연구용역의 주된 가치가 있어야지 모범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위법령을 어떻게 정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줬다 그런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예산 할 때도 법을 개정하지 않고 예산 먼저 짜고 들어오셔서 가지고 지금 뒤늦게 이렇게 법 개정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것하고 똑같이 관행을 반복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건?

○환경부장관 윤성규 모범은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까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위법령에서 들어간다면 예를 들면 방법별로 어떤 것들을 체크할 것이냐 이런 것도 전문가적인 시각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체크해야 한다라고 원칙만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인영 위원 밥부터 하시지 않고 승냥부터 뜨겠다는 말씀이지 않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법이 예를 들어서 제정되는 경우에……

○이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걸 다시 연구하려면 유예기간을 많이 두어야 되는데 유예기간을 최대한 짧게 해서 빨리 재활용을 활착시키기 위해서는……

○이인영 위원 밥이 어떤 밥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승냥을 뜯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기간을 주어서 국회의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이인영 위원 만약에 내년 3월까지 법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하위법령에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하나는 의심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만, 또 하나는 의심을 다 거세하고 난다 하더라도 일을 처리하는 순서들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계속 절차가 그런 식으로 반복되면 그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하셨으면……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니 위원님, 예를 들어서

법이 국회 통과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2년 이상을 다시 유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인영 위원 대개 야구하다 보면요 병살타는 치고 달리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고용노동부에 질의할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워크넷에서 성차별적인 면접요령을 게시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인영 위원 또 여러 곳에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삭제하셨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걸 좀 고용노동부장관께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워크넷을 운영하는……

○이인영 위원 예를 들어서 커피나 복사 같은 잔심부름에 대한 모범답안이 ‘한 잔의 커피도 정성껏 타겠습니다’ 이런 게 맞습니까? 그리고 결혼 후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 신중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구체적인 결혼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현명하다 이렇게 코치하고 성희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벼운 말 정도라면 신경 쓰지 않고 농담으로 잘 받아들일 정도의 여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모범답안으로 제시되면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결과적으로 여성 구직자들에게 상처를 드린 데 대해서……

○이인영 위원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워크넷을 운영하는 고용정보원에서 비록 민간 정보라 하더라도 정확히 스크린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 이걸 법적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한 것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위반하고?

이건 장관께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그 경위를 파악해서 앞으로 워크넷에 올리는 모든 민간 정보들도 사전에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워크넷에 올리는 민간 구인정

보도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인영 위원 모든 기업에도 이렇게 얘기해야 할 판에 정부가 운영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오늘 수석전문위원께서 전문위원실 전체 해서 행정입법과 관련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환경부 관련해서는 27건 그리고 고용노동부 관련해서는 10건을 주셨어요. 그리고 환경부 관련해서는 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부분들이라고 이야기된 게 11건이고 고용부는 5건이네요.

이건 제가 볼 때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한 악성이라고 규정하고 싶은데 좀 시정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할 사항은 법 개정을 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은 즉시 법령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다 검토는 해 보셨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지적사항을 봤습니다.

○이인영 위원 타당하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타당합니다.

○이인영 위원 나머지 27건 전체도 마저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고용노동부는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도 내부적인, 지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가급적 바르게 고쳐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법제심사 할 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정부가 위임입법을 남용하고 있는 이런 사례의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하반기 국회 시작할 때 첫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반기 국회 시작할 때 첫날 제가 일부러 점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건데요. 19대 국회 상반기 때 있었던 것만 해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것들과 관련해서는 얼마큼 더 묻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위임입법과 관련해서 권한 밖의 남용이 있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하시고 지금 지적되고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타당하면 즉각적으로 시정조치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동의합니다.

○**이인영 위원** 소위에서 이 문제 다룰 때까지 어느 정도 의견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법안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환경부장관님께 제가 하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싱크홀 문제로 하수관거·상수관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국회 내년도 예산에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환경부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에 대한 요구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위원장 김영주** 제가 이걸 국무조정실에다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할 수 있다’는 거면 정부 예산이 안 될 때나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울 때는 지원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사회적…… 지금 정말 국민들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싱크홀 문제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의 근거규정을 만들자는 그런 의미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것으로 환경부와 기상청 및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과 결의안 그리고 행정입법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사한 의안 중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의사일정 제6항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 제53항 국외 건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제79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88항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법률안, 제92항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해서는 양당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토론을 마친 의사일정 제1항부터

97항까지 97건의 법률안 등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에 장하나 위원님, 민현주 위원님, 주영순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이자스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도록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권성동 간사님, 최봉홍 위원님, 이인영 간사님, 은수미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특별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공식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예산결산 기금심사 (8인)	권성동 양창영 이자스민 주영순	새누리당(4)
	은수미 ◎이인영 장하나 한정애	새정치민주 연합(4)
법안심사 (10인)	◎권성동 김용남 문대성 민현주 최봉홍	새누리당(5)
	우원식 은수미 이인영 장하나	새정치민주 연합(4)
	심상정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청원심사 (8인)	양창영 이자스민 주영순 ◎최봉홍	새누리당(4)
	우원식 은수미 이석현 한정애	새정치민주 연합(4)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3인)

권성동 김영주 김용남 민현주

심 상 정 우 원 식 은 수 미 이 석 현
 이 인 영 이자스민 장 하 나 주 영 순
 최 봉 홍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한 공 식
 전 문 위 원 김 양 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 관 윤 성 규
 차 관 정 연 만
 기 획 조 정 실 장 이 재 현
 환 경 정 책 실 장 백 규 석
 물 환 경 정 책 국 장 오 종 극
 자 연 보 전 국 장 남 광 회
 자 원 순 환 국 장 홍 정 기
 기 후 대 기 정 책 관 최 흥 진
 상 하 수 도 정 책 관 정 회 석
 환 경 정 책 관 이 윤 섭
 환 경 보 건 정 책 관 나 정 균

기상청

청 장 고 윤 화
 차 장 정 흥 상
 기 획 조 정 관 이 우 진
 기 상 산 업 정 보 화 국 장 김 성 균

고용노동부

장 관 이 기 권
 기 획 조 정 실 장 심 경 우
 노 동 정 책 실 장 권 영 순
 인 력 수 급 정 책 국 장 박 화 진
 산 재 예 방 보 상 정 책 국 장 안 경 덕
 노 동 시 장 정 책 관 정 형 우
 고 용 서 비 스 정 책 관 문 기 섭
 고 령 사 회 인 력 심 의 관 이 수 영
 근 로 개 선 정 책 관 권 혁 태
 노 사 협 력 정 책 관 임 무 송
 공 공 노 사 정 책 관 송 문 현
 정 책 기 획 관 김 중 열